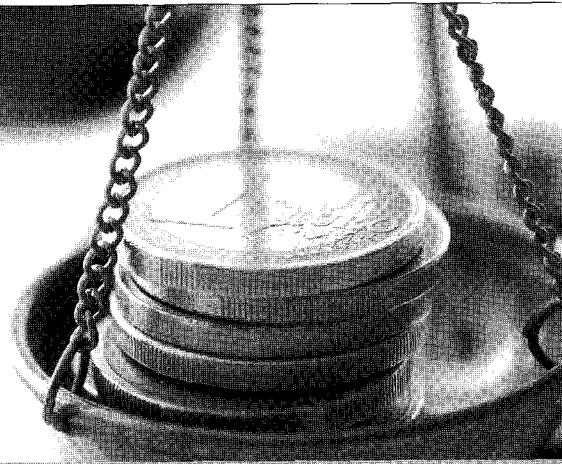




송재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확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올해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이번호에는 세법령 개정, 기획재정부장관고시 개정 등에 따라 2010년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제도 개선

가. 세무조사기간의 제한

중소사업자(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장부 은닉이나 지역제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최초 연장시) 또는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2회 이상 연장시)을 받아야 하며, 연장하는 조사기간도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실지거래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의 제한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미 작년말 국세기본법이 개정될 때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가 신설되면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시행 중에 있다.

나. 세무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및 통합조사의 원칙 적용

조사진행 중에 구체적인 세금탈루형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반면에 세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한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통합조사의 원칙'을 적용하고 조사하도록 한다.

다. 세무조사의 중지

납세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세법상 적용될 이자율의 상향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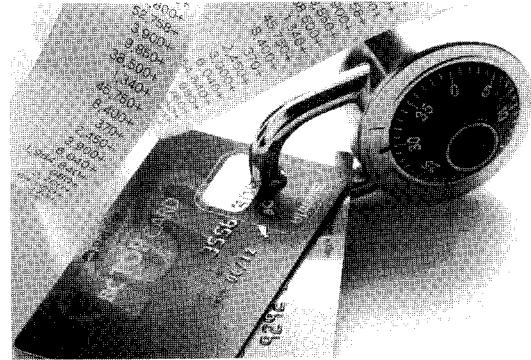
종전에는 국세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3.4%로 적용되었으나, 4월 1일 이후부터는 근거가 되는 은행권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상승한 것을 반영하여 4.3%로 상향조정했다.

이외에도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해지는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상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5년 이내에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의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부가세·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함께 상향조정되었다.

3.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2010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다음의 4가지 품목에 대하여 5%의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는 별도)가 과세되는데, 에어컨(월간 소비전력량 370Kwh 이상), 냉장고(월간 소비전력량 40Kwh 이상), 세탁기(드럼세탁기로 1회 세탁 소비전력량 720Kwh 이상), TV(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화면의 대각선 길



이가 107cm(42인치형) 이하는 제외)이다.

적용은 2010년 4월 1일~2012년 12월 31일 기간 중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 신고된 것에 한한다.

이같은 과세로 늘어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에너지 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4.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가. 유통주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 축소

종전에는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및 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액의 일정비율(개인음식점은 8/108, 법인음식점은 6/106, 2010년말까지 적용)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했는데, 앞으로는 음식업자 중에서도 유통주점 등은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4/104로 축소하여 적용한다.

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 개선

수입 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의 범위와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가 서로 달라 장애인들의 불만이 초래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2010년 4월 1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는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고ش병환자 치료제, 부신이영양증환자 치료제, 근육이양증환자 치료용 근육모세포 등 11개 물품이 있음)에 대하여는 부가 가치세도 함께 면제되도록 개정되었다.

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상향조정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 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3.4%에서 4.3%로 상향조정되었다. 2010년 1기 예정신

고분(2010년 1월 1일~3월 31일, 4월 25일까지 신고)부터 조정된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적용된다.

5. 상속·증여세법상 채권평가기관 범위 조정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경우) 중에서 처분예상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평가하도록 하는데 이같은 평가기관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2010년 3월 말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 문의 : (02)552-6100 대현회계법인

고소득 전문직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고소득 전문직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됐다.

지난 4월 1일 국세청은 변호사·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이날부터 30만원 이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급 의무화 업종 중 사업서비스업 직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이다.

현금영수증 의무화 업종 중 보건업 직종은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등이다.

기타업종 중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직종은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고누락분을 추징하고 여기에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과태료 부과대상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300만원으로 1인당 연간 한도는 1,500만원이다.